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17
----------	------

202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찬성자 12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라. 상정결과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오한아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기에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시장은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 시장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해당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악발전의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제정의 필요성

- ‘국악’은 1907년 일제통감부가 교방사(敎坊司)를 장악과(章樂課)로 개칭할 때 두었던 국악사장(國樂師長)과 국악사(國樂師)에서 기원하였으나, 조선시대에도 ‘국악’을 사용한 기록이 있음. (「중종실록」, 「선조수정실록」 등) 1)

오늘날 국악은 비단 궁중음악이나 정악뿐 아니라 민속음악, 예술음악, 의식음악, 창작음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특히, 국어(國語), 국사(國史)와 더불어 민족 정체성을 대표하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

- 국악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아악’, ‘당악’, ‘속악’, ‘민속악’ 등과 같은 전통음악에만 집중되어 있어 ‘무용·연희·극’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협의의 국악이란 점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음.

---

1) 국립국악원, 국악산업 조사를 위한 분류체계 수립 연구(18.12.10.)

### <국악의 사전적 정의>

국악 정의	분류	사전명(출처)
나라의 고유한 음악, 서양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	-	표준어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또는 전통 음악을 일컫는 말	<향악>, <아악>, <당악>, <속악>으로 구분하고 구성상으로는 <聲歌>, <奏樂>, <舞踊>의 세 갈래로 구분	음악용어대사전 (태림출판사)
예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며, 전통 음악과 최근의 한국적 창작음악까지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음악	<아악>, <당악>, <속악><향악>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로 20세기 초에 서양 음악과 구별하기 위해 쓰였고, 전통 음악과 새로 작곡된 창작 음악까지를 포함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 <민요>, <범패>	웅진대백과사전 (웅진출판사)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총칭, 일명 한국음악	-	한겨레음악대사전 (도서출판보고사)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음악, 또는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	<정악>, <민속악>	두산백과 (두산출판사)

- 국악의 학술적 정의는 ‘전통예술’, ‘전통공연예술’, ‘국악’ 등 개념적 용어로 국악을 사용하였지만, 국악을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으로 국한하거나 무용·연희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 <국악의 학술 및 정책적 정의>

연구자	개념적 용어	정의
문화체육관광부(2006)	전통예술	- 전통예술인 ‘악·가무 및 연희’ 로 정의
김규원(2015년)	전통공연예술	- 전국의 전문, 비전문인에 의해 전승된 공연예술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의 원형 및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 창작된 공연예술 분야’
임영순 외 2인(2016)	전통공연예술	-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활동으로서 전통 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로 하는 예술행위 및 그 성과

연구자	개념적 용어	정의
권오성(2007)	국악	- 옛 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통음악이며, 전통적 양식을 잃지 않은 기법으로 새로 창작된 음악인 신국악(창작 국악)도 포함
송혜진(2015)	국악	-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을 아우르는 민족의 전통 음악이고, 이러한 전통음악과 서양의 작곡기법·음악양식을 혼용하여 새로이 창작된 음악인 신국악도 포함
김영미(2015)	국악	- 우리나라 고유의 국악기로 연주된 전통음악
정혜원(2014)	국악	-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래동요, 사물놀이, 민요, 장단, 마당극' 으로 정의

- 정책적 정의는 국악을 대신하여 전통예술 또는 전통공연예술이란 용어로 사용하나 전통예술이 국악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국악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국악의 일반 장르 (의식음악, 향토음악, 민속음악 등)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법률적 정의는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전통공연예술, 문화예술, 무형문화재 등과 같이 광의의 범위에 일부 유형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므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국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국악의 법률적 정의>

연번	법률	정의	용어
1	공연법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국악은 공연 관람물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

2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전통공연예술
3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전통예술
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통공연예술 또는 전통예술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19년 국악의 공연건수는 504건(5.4%)으로 타 장르(클래식 : 3,408건/36.5%, 뮤지컬 : 2,310건/24.7%)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

공연예술 매출액(티켓판매금액) 약 2,330억원 중 국악 공연 매출액은 약 15억원으로 공연예술 전체 장르 매출액 중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로 타 장르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 <2019년도 장르별 공연 통계>

장르	공연건수		개막편수		상연횟수		매출액		예매수	
	(건)	(%)	(편)	(%)	(회)	(%)	(천원)	(%)	(건)	(%)
연극	1,791	19.2	1,712	18.6	40,326	50.7	30,934,138	13.3	1,968,894	23.8

뮤지컬	2,310	24.7	2,247	24.4	31,028	39	163,400,174	70.1	4,012,539	48.5
클래식	3,408	36.5	3,407	37	3,647	4.6	19,352,256	8.3	1,210,594	14.6
오페라	239	2.6	239	2.6	401	0.5	4,137,769	1.8	199,359	2.4
무용	539	5.8	539	5.9	1,402	1.8	11,633,691	5	450,661	5.5
국악	504	5.4	503	5.5	1,337	1.7	1,501,684	0.6	216,760	2.6
복합	556	5.9	553	6	1,342	1.7	2,005,181	0.9	208,781	2.5
합계	9,347	100%	9,200	100%	79,483	100%	232,964,893	100%	8,267,588	100%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19년 기준)

국악 공연 티켓가격대별 매출액에서 보듯이 3만원 미만 69.6%, 10만원 이상 2.3%로 이는 티켓가격이 타 장르에 비해 낮은 금액의 공연이 많고 예매수도 216,760건(2.6%)으로 타 장르에 비해 유료 관객률 또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음.

<공연예술 장르별 티켓 가격대별 매출액 비중>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18년 기준)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문화 예술 관람 의향은 영화(80.5%), 대중음악(29.9%), 뮤지컬(20.8%), 연극(20.5%) 순으로 나타나 전통예술(12.2%)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를 위한 제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류의 새물결, 국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국악발전 종합계획(’14. 3월)’을 수립하였음.
- ※ 총 32개 사업 중 미추진 3개, 미흡 4개, 변경 8개, 추진중인 사업이 14개이고, 추진완료된 사업은 3개에 불과함.

〈「서울시 국악발전 종합계획(2014)」 성과 중 미추진, 미흡 현황〉

연번	단위사업명	현황	사유
1	국악기박물관 등 건립 추진	미추진	·'15.2월 국악 특정 분야의 시설로 조성할 경우 타분야의 반발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개념의 박물관을 조성할 것
2	서울시 국악종합센터 설치	미추진	중장기 검토 필요
3	국악로 문화지구 지정	미추진	·동지내몰림 등 부작용 우려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사업추진
4	국악 야외공연 상설화	미흡	·다양한 행사 증가로 소음 및 교통통제 민원 발생
5	문화예술시민대학 국악분야 운영	미흡	전통예술 포함 ‘서울시민예술 대학’ 운영, 공모사업으로 국악분야 개설 담보 곤란
6	고궁공연 등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 구축	미흡	-
7	민간기업 등 다양한 계층 국악공연 강화	미흡	·민간대상 사업화 곤란 ·사업 구체화 미비

(서울시 국악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국악플랜2025 발취 및 재구성)



이후 서울시는 국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핵심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악 활성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악센터의 필요성 검토 및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하여 ‘서울시 국악 활성화 방안 연구(’19.11월)’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국악플랜 2025(문화예술과-9748, ’20.6월)’을 수립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즐기는 국악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비전 아래 24개 사업(신규 18개)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국악에 대한 단독의 입법은 없는 상황이며,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국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에 국악관련 법안이 19대부터 네 차례 발의되고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 또는 계류된 상황이며,

연번	의원명	법안명
1	19대, 강동원, 임기만료 폐기	전통국악진흥법
2	20대, 김두관, 임기만료 폐기	국악문화산업진흥법
3	21대, 임오경, 2020.9.2.	국악문화산업진흥법
4	21대, 김교흥, 2020.9.9.	국악진흥법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11.12.)하여 시행중임.

- 문화본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고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법·제도상 체계적인 뒷받침을 통해 국악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1) 조례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국악진흥위원회 설치,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8조	국악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9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0조	국악의 홍보 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6조	실태조사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국악 진흥 사업	부칙	-

###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①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필요한 자원조달, ②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와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

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현황 분석, ③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④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시 전문가 및 국악관련 기관·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미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국악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국악활성화TF’를 구성하여 국악관련 기관·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 제5조에서 명시하는 사항들이 반영된 ‘서울 국악플랜 2025(문화예술과-9748, 2020.6월)’를 수립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4)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①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②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③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④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⑤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 ⑥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⑦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8개의 사업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 국악플랜 2025’는 3개 분야, 6대 핵심과제, 24개 사업을 추진하는 바, 안 제7조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음.

### <서울국악플랜 2025 세부사업 목록>

주요 사업	소관 부서	
<b>1. (시민 모두가 즐기는 국악) 생활 속 국악향유권 확대(8개)</b>		
1-1.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국악 교육 확대		
1-1-① (영유아) 영유아 국악교실 운영	신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1-② (청소년) 국악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	계속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1-③ (취약계층) 저소득층 국악교육 확대	계속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1-④ (시민·어르신) 시민 국악강좌 운영	신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복지정책실 인성·모자정책과 (50플러스재단)
1-2. 일상에서 만나는 가까운 국악		
1-2-① (지역) 시민에게 찾아가는 국악공연	신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2-② (소외계층) 국악당 객석나눔	신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2-③ (제도) 국악 쿼터제 도입	신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2-④ (생활문화) 국악 생활문화 활성화	신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b>2. (새롭게 성장하는 국악) 인적·물적 창작역량 강화(8개)</b>		
2-1. 국악인 창작지원 강화		
2-1-① (국악인) 국악인 창작활동·공간 지원	확대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2-1-② (신인) 국악 일자리 지원확대	신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1-③ (신인) 신진 국악인 발굴·지원	확대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④ (전문가) 시립국악관현악단 위상 강화	계속	세종문화회관
2-2. 국악로 중심 창작 기반 강화		
2-2-① (거점) 국악로 ‘국악의 메카’ 육성	신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주요 사업		소관 부서
		규 신 규
2-2-② (조 직) 서울 국악센터 설치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2-③ (지 역) 국악특화 생활문화센터 설치		신 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2-④ (거 점) 국악 거점시설 특성화		계 속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b>3.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국악) 세계인이 즐기는 국악관광 활성화(8개)</b>		
<b>3-1. 세계의 음악으로 국악 글로벌화</b>		
3-1-① (해외진출) 국악공연단 해외진출 지원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1-② (온라인) 온라인 콘텐츠 음악시장 유통지원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1-③ (외국인) 외국인 국악강좌 운영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1-④ (시스템) 글로벌 관람환경 개선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b>3-2. 국악 관광 콘텐츠 확산</b>		
3-2-① (콘텐츠) 국악 관광상품 개발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2-② (축 제) 세계적 국악관광축제 육성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2-③ (콘텐츠) 서울 대표 국악 상설공연 개발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3-2-④ (홍 보) 국악 홍보마케팅 강화		신 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5) 국악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이 안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안 제7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역할의 ‘국악진흥위원회’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국악 관련 위원회는 없으나 ‘서울 국악플랜 2025’ 수립을 위해 국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악활성화TF’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국악플랜 수립과 국악축제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만을 개최하였음.

이에 '국악진흥위원회'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없으므로 설치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나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견제와 균형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수당지급을 위하여 위원의 수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여야 하나(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전부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의 없음.

#### (6)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안 제9조는 시장이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안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운영하는 국악인턴제 운영, 찾아가는 국악공연 및 국악버스킹, 국악투어프로그램, 국악로 특화거리 조성, 신나는 국악여행 등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악 관련 단체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7) 국악의 홍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시장이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9년 제1회 국악축제를 개최하며 ‘국악활성화’ 사업 내 국악 관련 홍보비가 편성되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 5.3%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국악플랜 2025’를 통해 살펴본 홍보비는 2025년까지 약 1%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인 바, 국악을 세계의 음악으로 글로벌화하고자 한다면 점차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 국악플랜 2025’에서의 홍보비 비율>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	총예산	홍보비	차지비율
1	2020	14,605	110	0.8
2	2021	16,853	150	0.9
3	2022	18,772	150	0.8
4	2023	20,374	200	1.0
5	2024	22,394	200	0.9
6	2025	23,467	250	1.1

## (8)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시장이 국악 진흥 정책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현재 크라운해태와 협약을 맺어 초등학생의 국악 관심도 제고와 신진 국악단체 성장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

악 진흥과 교육청,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성화 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됨.

### <국악 관련 협력체계 현황>

단체명	협력기간	협약서유무	협약내용
크라운해태	2017년부터 10년간	○	서울남산국악당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공연장 시설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국악 향유 기회확대와 국악발전에 기여

### (9)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이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위탁할 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 문화본부에서는 남산국악당과 돈화문국악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국악 활성화 TF’ 제6차 회의에서 서울국악센터는 민간위탁 또는 사업소로 운영할 경우 리스크가 크고, 장기적으로 재단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 라. 종합 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악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삶에 질에 대한 인식과 여가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여가 활동으로서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옛 것을 소중히 하고 보존하며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나,

최근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하면서 주요 내용을 담은 구절을 반복하는 가사에 중독성 강한 리듬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음악<sup>2)</sup>처럼 현대사회의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현 방법의 변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도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는 국악 외 장르 구분 없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이 지니는 시장실패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불황이라는 벽에 부딪힌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본부에서는 코로나 우울<sup>3)</sup> 이후의 상황에서도 예술가들이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보다 인프라 지원과 네트워크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제안 및 사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예술생태계 자체의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2) 이날치밴드, “범 내려온다”

3)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 대체어로 ‘코로나 우울’을 선정함(시사상식사전)

- ‘국악발전 종합계획(’14.3월)’을 수립하여 계획한 총 32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3개, 미추진 사업은 7개이며, 이와 유사한 ‘서울예술인플랜(’16.10월)’을 수립하여 계획한 총 42개 사업 중 현재 폐지된 사업은 6개, 미추진 사업은 1개임.

중장기 계획 사업의 미추진 또는 폐지는 시민으로부터 시정 정책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화본부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정책실행과정에서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1917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오한아 의원	2020. 9. 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국악 향유 기회 확대 및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li> <li>○ 특히, 국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국악 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li> </ul>				
추진경과	○ 2020.10.15. 조례안 발의				
부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동 조례안은 서울시 국악의 진흥과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함.				
대응방안	○ 별도 대응 내용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김용환(☎2133-2576)	담당	정의정(☎2133-257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한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17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1명)

찬 성 자 : 김화숙, 장상기, 이상훈,  
문병훈, 이병도, 이은주,  
이준형, 김춘례, 경만선,  
김소영, 박기재, 황규복  
의원(12명)

## 1. 제안이유

- 현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의 진흥과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기에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국악발전의 환경을 조성,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 다. 시장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희(戲)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5.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
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

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국악의 홍보 등) ①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 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제8조(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국악의 홍보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제10조(국악의 홍보 등)의 경우, 해당사업을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 ※ 또한, 같은 조례안 제7조 제5호(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와 제11조(협력체계 구축)는 서울돈화문 국악당 및 남산국악당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245,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45,000천원으로 연평균 249,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245,000천원(연평균 249,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실태조사(제6조)	25,000	-	-	25,000	-	50,000	
	국악진흥위원회 (제8조)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단체 육성지원 (제9조)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150,000	
	소계(b)	264,000	239,000	239,000	264,000	239,000	1,245,000	
□ 총 비용(b-a)		264,000	239,000	239,000	264,000	239,000	1,245,000	

○ 실태조사 ≙ 50,000천원

$$- 5년간 실태조사 비용 = \sum_{i=1}^5 (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2024년)

$$- 비용 \equiv 25,000천원 \times 2회 = 50,000천원$$

※ 한국문화원연합회(2019) 「2019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 25,000천원을  
준용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

○ 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 45,000천원

$$- 5년간 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비용 = \sum_{i=1}^5 (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5년)

$$- 연간비용 \equiv 참석수당 + 위원회 운영경비$$

$$= (150천원 \times 12명 \times 4회) + (30천원 \times 15명 \times 4회) = 9,000천원$$

※ 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총 15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참석수당 지급  
대상은 12명이고,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단체 육성·지원 ≙ 1,150,000천원

- 5년간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비용 =  $\sum_{i=1}^5$ (연간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5년)

- 연간비용 ≙ 230,000천원

※ 서울시 문화본부(2020년) 「연극단체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비 230,000천원  
준용하였으며 3년마다 실시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32

e-mail : waterkim@seoul.go.kr